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8,000,000	11,340,000
일반회계		319,000,000	9,570,000
특별회계		59,000,000	1,770,00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19,000	18,57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88,000	8,64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855,000	85,6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82,000	5,460
	기반시설특별회계	65,000	1,950
	치수사업특별회계	596,000	17,88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21,000	63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542,000	736,2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52,000	127,5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580,000	767,4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953,169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